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70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8. 29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일자리 수요 증가와 다양한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·수행을 위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달성시니어클럽을 전문성 및 전담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·비영리법인(단체)에 위탁을 추진코자 함.

2. 제안근거

- 「노인일자리법」 제9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)
- 「노인일자리법 시행령」 제5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달성시니어클럽(노인일자리지원기관) 운영전반

나. 위탁필요성

-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
-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및 취업 연계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해당분야 전문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: 달성시니어클럽 운영 전반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, 정보 제공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- 관련법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
-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라. 위탁시설

연번	운영인	소재지	시설장	시설규모	근무인원	사용형태
	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	화원읍 비슬로512길 66,2층	김지웅	401.43㎡	38명	무상 임대

마. 위탁예산(2025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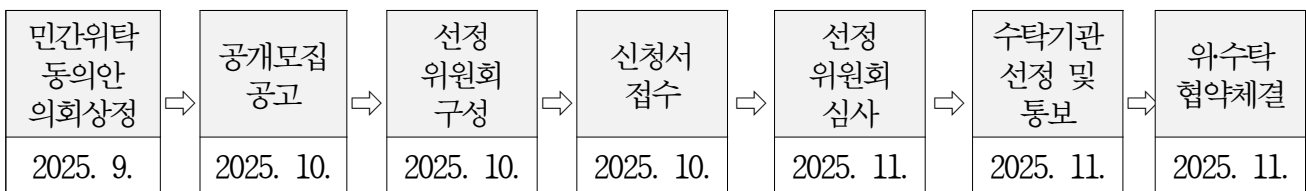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원)

계	운영비 지원		
	시비	군비	비고
891,343	397,846	493,497	군비 : 일자리지원팀 인건비 및 사업비 포함

바. 위탁 기간 : 5년(2026. 1. 1. ~2030. 12. 31.)

사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아. 민간위탁 추진일정



자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검토기준	검토결과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및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수행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방식보다, 운영의 전문성·효율성 및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공급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함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	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, 위·수탁 업무협약 체결, 수탁자 책임성 확보, 지속적인 지도·감독 강화 및 처리 상황 점검 등을 통한 공공성 및 안정성 유지가 가능함
3. 경제적 효율성	위탁 시 민간자원 활용(보조금, 후원금, 법인전입금 등) 및 위탁기관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높음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	사회복지 관련 자격 및 경험이 있고,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위탁 시 해당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및 매년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해당 사무의 성과 측정 가능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행정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도·감독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
최종 검토결과	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·기술 등을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법인전입금·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 확보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달성 시니어클럽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함

차. 향후 일정

- 위탁운영 법인(단체) 공모 및 신청서 접수 : 2025. 10월 중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: 2025. 11월 중
- 위·수탁 계약체결 : 2025. 11월 중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
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노인일자리법)

제9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
1. 노인인력개발기관: 노인일자리개발·보급사업, 현장의견청취·조사사업, 교육·홍보 및 협력사업, 프로그램인증·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
2. 노인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,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3. 노인취업알선기관: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
2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, 정보 제공
3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
5.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(이하 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·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
1.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(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)
2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
3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

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

위탁할 사무·위탁조건·수탁기관 선정방법·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, 위탁사무,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■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

1 기본 검토사항

대상 사무	달성시니어클럽 운영
민간위탁 추진 목적	○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니어클럽의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,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함
위탁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(노인일자리 전담기관)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)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(시설의 위탁) ○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 위탁사무의 기준 등)
위탁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경위 달성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5. 12. 31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위탁을 진행 ※ 현위탁기간 : 2021. 1. 1. ~ 2025. 12. 31. ○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30. 12. 31.(5년) ○ 위탁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명시된 사업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」 제13조(사업내용) 제2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p>적 정 성 검 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및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수행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방식보다, 운영의 전문성·효율성 및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공급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함 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, 위·수탁 업무협약 체결, 수탁자 책임성 확보, 지속적인 지도·감독 강화 및 처리 상황점검 등을 통한 공공성 및 안정성 유지가 가능함 ○ 경제적 효율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탁 시 민간자원 활용(보조금, 후원금, 법인전입금 등) 및 위탁기관의 전문 인력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높음 ○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복지 관련 자격 및 경험이 있고,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위탁 시 해당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○ 성과 측정의 용이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및 매년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해당 사무의 성과 측정 가능 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도·감독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											
<p>수탁기관 선정방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)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 ○ 수탁기관 선정 시 공모 의한 방법으로 추진 ○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및 선정 											
<p>민 간 위 탁 금 *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</p>	<p>○ 연간 운영비 소요액 : 891,343천원정도 (2025년 기준) (단위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계</th> <th colspan="3">운영비 지원</th> </tr> <tr> <th>시비</th> <th>군비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891,343</td> <td>397,846</td> <td>493,497</td> <td>군비 : 일자리지원팀 인건비 및 사업비 포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계	운영비 지원			시비	군비	비고	891,343	397,846	493,497	군비 : 일자리지원팀 인건비 및 사업비 포함
계	운영비 지원											
	시비	군비	비고									
891,343	397,846	493,497	군비 : 일자리지원팀 인건비 및 사업비 포함									

<p>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대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 -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○ 향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9월 : 민간위탁 동의안 군의회 제출 - 2025. 10월 : 공개모집 - 2025. 11월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- 2025. 11월 : 수탁자 선정 홈페이지 공개 및 협약 체결 <p>※ 위탁운영 지정 결과 보고(구→시→보건복지부) :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